

2023년 제7회 서울특별시 지방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지방공무원법」 제35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2조에 따라 2023년 제7회 서울특별시 지방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0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 직위 및 인원

연 번	임용분야	임용등급	임용 인원	근무예정 부 서	주요업무
1	통계자료 관리요원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1명	서울기록원 보존서비스과	▶ 서울기록원 서고의 안정적인 관리 및 환경 유지 ▶ 보존기록물 반출입·보안 관리 및 통계·데이터 관리 ▶ 기록물 탈산·소독 처리 및 탈산소독실 운영 ▶ 마이크로필름 디지털화 및 보존자료 관리 ▶ 서울기록원 온라인, SNS 등 홍보콘텐츠 관리 및 운영 ▶ 국내외 기록물 보존서비스 분야 대외교류 협력 및 지원
2	위험물 취급요원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1명	물순환안전국 난지물재생센터	▶ 화학물질 안전관리 총괄 업무 ▶ 화학물질 투입설비 운전·조작 및 감독 ▶ 화학물질 재해 발생 예방 업무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사항 조치 ▶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안전교육 ▶ 기타 직무 관련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
3	임상심리사 [재공고]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2명	은평병원 진료부	▶ 정신과 외래·입원환자 심리평가, 인지치료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수련생 교육 및 임상 지도감독 ▶ 지역사회 취약계층 대상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 ▶ 임상심리실 및 의학도서실 운영

2. 응시자격(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가. 응시연령: 20세 이상(2003.12.31. 이전 출생자)

나. 거 주 지: 제한 없음

다.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임용 예정일(2023년 12월 중)을 기준으로 근무 가능한 자만 응시가능

라. 응시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또는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마. 응시자격요건: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연번	구 분	응시자격 요건
1	통계자료관리요원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1. 임용예정 직위와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직위 관련 직무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법인, 연구기관 등의 통계·데이터·기록물 관련 분야 근무 경력 ◆ 우대요건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증 소지자 - 임용예정 직무관련학과 석사학위 취득자 - 관련분야 연구실적(논문실적) 및 근무경력 보유자 ※ 관련학과: 기록학, 문헌정보학, 문화재보존학과 등 기록물 관련 분야 ※ 관련분야: 기록물 및 문화재 보존관리 관련 계통
2	위험물취급요원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안전·화공·가스·대기관리·수질관리·폐기물처리 또는 산업위생관리 기술사 및 위험물기능장 또는 가스기능장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산업안전·기계·화공·수질환경·대기환경·폐기물처리·위험물 또는 가스 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화약류제조·산업안전·가스·산업위생관리·수질환경·대기환경 또는 폐기물처리 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연번	구 분	응시자격 요건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약류제조·산업안전·수질환경·대기환경·폐기물처리·위험물·가스·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또는 환경·위험물·가스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 경력 7년 이상인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위험물관리 분야 강의·교육 훈련, 연구개발, 시설관리 분야 근무 경력
3	임상심리사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1.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증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자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자격증 취득 후 병원, 치료기관 및 교육기관 등에서 정신질환자 대상 심리치료 및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수련 관련 업무 경력 ◆ 우대요건 임상심리전문가((사)한국임상심리학회 발급) 자격증 소지자 ※ 민간자격증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 (www.pqi.or.kr)에서 확인 가능한 자격증에 한하며, 국제자격증은 증빙 가능하여야 함

※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5항)

※ 경력증명의 경우 해당 직무와 직접적 연관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여야 하며 불분명한 경력기재 및 증명하지 못함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임

※ 학위 관련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상기와 학과와 전공학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 「우리대학(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제출서식 첨부 7)

3. 시험일정 및 방법

가. 시험일정

내 용	일 정	장 소
응시원서 접수	2023. 10. 26.(목) ~ 10. 30.(월)	우편 및 방문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3. 11. 16.(목)	서울시 누리집 등
면접시험	2023. 11. 27.(월) ~ 11. 30.(목)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면접합격자 발표	2023. 12. 4.(월) (예정)	서울시 누리집 등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단,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공고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 바람)

나. 시험방법

○ 1차 시험: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초과한 때에는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5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 단, 선발예정인원이 2명 이상인 경우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 결정
- ※ 서류전형기준은 직무 연관성, 경력 및 업무실적,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등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에서 별도 설정·시행

○ 2차 시험: 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평가
- 직무과제보고서 작성, 집단토론 또는 발표면접(응시자 2명 이하일 경우), 개별 심층면접을 통해 응시자의 자질 및 발전 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직무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라 면접방법은 변경될 수 있음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인사위원회의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 ※ 최종합격자 공고 및 임용은 면접합격자 발표 공고 이후 채용기관(근무예정부서)에서 시행됨
-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4.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23. 10. 26.(목) ~ 10. 30.(월) <3일간>

나. 접수방법: 우편(등기) 또는 방문 접수 ※우편접수 권장/ 응시번호는 문자 개별통보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자(2023. 10. 30.(월))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하며, 퀵서비스 및 택배 등을 통한 접수는 받지 않음
- 방문접수 시간: 09:00 ~ 18:00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다. 접수장소: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 우편접수: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40길 58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인재채용과 경력채용팀

○ 방문접수: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창의관 2층(우측 노란색 건물)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붙임된 제출서류 양식을 사용

※ 접수마감일자까지의 서울특별시 수입증지(영수증, 매출전표)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5. 제출서류(원본서류 제출 원칙)

가. 응시원서 1부(첨부 1)

- 응시수수료(가군 10,000원/ 나군 7,000원/ 다군 5,000원) 상당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부착(영수증 또는 매출전표)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는 종이 증지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구입 영수증 또는 매출전표를 응시원서에 부착하시면 됩니다.(판매장소: 서울시청 신청사 1층 열린민원실 ☎02-2133-7908)

※ 일부 자치구 재무과에서도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매출전표)를 취급하나, 사전에 발행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매출전표)를 구매하여야 합니다.

☞ 자치구 수입증지(매출전표)가 첨부된 응시원서는 접수 불가

※ 온라인 구입은 ETAX홈(etax.seoul.go.kr)에서 절차(신고납부 → 서울시 채용수수료)에 따라 하면 됩니다.

※ 원서접수처(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에서는 증지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입증지 구입 안내 ◆

1. 직접 방문 발급

- 직접방문: 서울시 열린민원실(신청사1층) 또는 가까운 구청 재무과(방문전 사전연락후 방문)

▶ 서울시청 열린민원실: 현금 또는 신용카드(체크카드 가능)

※ 현금일 경우에는 응시원서에 인증 날인(방문시 필히 지참)

※ 카드일 경우에는 결제 후 매출전표 발행(카드사용/가맹점용), 부착

▶ 구청 재무과: 카드만 사용 가능

2.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시스템(ETAX) 발급: 시민이 직접 이택스 내 「서울시 임기제 채용수수료」 메뉴에서 구매 가능

▶ 성명, 주민번호, 금액(5천원, 7천원, 1만원 중 선택) 입력 후 결제 구매(회원, 비회원 모두 가능)

◆ 메뉴위치: [ETAX(etax.seoul.go.kr) > 신고납부 > 서울시 임기제 채용수수료]

▶ 납부확인서는 1회만 발급 가능, 복제방지 및 원본확인용 발급번호 표기됨

◆ 메뉴위치: [ETAX(etax.seoul.go.kr) 홈 > 납부(영수증)확인 > 신고납부확인
납세번호 클릭 > 하단 “**납부확인서**” (영수증×) 클릭 후 인쇄]

나. 이력서 1부(첨부 2)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 다. 자기소개서 1부(첨부 3)
-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첨부 4)
- 마.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첨부 5)
- 바.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첨부 6)
- 사. 주민등록 초본(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 아.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학위증서(석사 이상) 또는 학위증명서 1부
- 자.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재직) 증명서 1부(이력서에 제시된 경력)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응시자격요건에 명시된 **경력 인정범위 해당업무를 반드시 기재**)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 직무내용 기재가 안 될 경우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첨부8)’** 추가 제출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가. 동일계통학과 증명서(첨부 7)
- 나.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1부(첨부 8)
- 다. 응시자격 요건 자격증 및 증빙자료
- 라. 자기소개서 관련 증빙자료

-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인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 폐업기관의 경우 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국세청 홈택스 발급가능), ②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류* ①, ②모두 제출
 -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중 1개 선택

※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국세청 홈택스)**

-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접속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접속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즉시발급 증명 → 소득금액증명 →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 관련 문의 : 국세청 (☎126)

6. 유의사항

- 가. 응시원서는 1개 분야만 접수할 수 있으며,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나.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서접수는 가능할 수 있으나, 심사과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라. 입증자료는 사본제출을 허용하고, 원본으로 제출받은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탈락자가 원할 경우에는 반환합니다.
- 마.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험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바. 전형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사.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아.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7. 기타 참고사항

- 가.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재공고의 경우 예외)
- 나.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누리집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 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면접시험 점수를 응시자에게 공개합니다.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점수 안내)
- 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호봉제 적용을 받으며, 채용자의 경력 사항 호봉인정은 임용 후 별도 심사를 통해 인정합니다.

※ 응시자격 요건의 근무경력과 호봉책정시 인정되는 '유사경력'은 인정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시험에 합격한 경우라도 호봉책정시 해당 근무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인재채용과 경력채용팀(02-3488-2341, 2342)
- 직무내용 관련 문의
 - 통계자료관리요원: 서울특별시 서울기록원 운영지원과(02-350-5632)
 - 위험물취급관리요원: 서울특별시 난지물재생센터 관리과(02-300-8511)
 - 임상심리사: 은평병원 원무과(02-300-8012)

붙임 제출서류 서식 1부

직무기술서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 인원
통계자료관리요원	지방전문경력관나군	1명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서울특별시	서울기록원 보존서비스과

주요업무	○ 서울기록원 서고의 안정적인 관리 및 환경 유지 ○ 보존기록물 반출입·보안 관리 및 통계·데이터 관리 ○ 기록물 탈산·소독 처리 및 탈산소독실 운영 ○ 마이크로필름 디지털화 및 보존자료 관리 ○ 서울기록원 온라인, SNS 등 홍보콘텐츠 관리 및 운영 ○ 국내외 기록물 보존서비스 분야 대외교류 협력 및 지원
-------------	---

필요역량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	---

필요지식	○ 기록물 관리, 통계·데이터 관련 분야 전문지식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업무 경험 ○ 기록물 보존·복원, 서고 관리, 활용 등 기록물 관리 실무 경험
-------------	--

응시자격요건	경 력	1. 임용예정 직위와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직위 관련 직무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법인, 연구기관 등의 통계·데이터·기록관리 관련 분야 근무 경력
우대조건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증 소지자 ○ 임용예정 직무관련학과 석사학위 취득자 ○ 관련분야 연구실적(논문실적) 및 근무경력 보유자 ※ 관련학과 : 기록학, 문헌정보학, 문화재보존학과 등 기록물 관련 분야 ※ 관련분야 : 기록물 및 문화재 보존관리 관련 계통

직무기술서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 인원
위험물취급요원	지방전문경력관나군	1명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난지물재생센터

주요업무	○ 화학물질 안전관리 총괄 업무 ○ 화학물질 투입설비 운전·조작 및 감독 ○ 화학물질 재해 발생 예방 업무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사항 조치 ○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안전교육 ○ 기타 직무 관련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
-------------	--

필요역량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	---

필요지식	○ 화학물질 설비공사 및 유지보수, 운전·취급, 안전관리 등에 관한 지식 ○ 화학물질 재해예방, 응급조치에 관한 지식
-------------	--

응시 자 격 요 건	자격증 및 학위·경력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안전·화공가스·대기관리·수질관리·폐기물처리 또는 산업위생관리 기술사, 위험물기능장 또는 가스기능장 자격증 소지한 사람 2. 산업안전·기계·화공·수질환경·대기환경·폐기물처리·위험물 또는 가스 분야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해당 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화약류제조·산업안전·가스·산업위생관리·수질환경·대기환경 또는 폐기물처리 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해당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약류제조·산업안·수질환경·대기환경·폐기물처리·위험물·가스·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또는 환경·위험물·가스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해당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사람
우대요건		해당 없음

직무기술서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 인원
임상심리사	지방전문경력관나군	2명

임용예정 기관명	근무예정 부서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진료부

주요업무	○ 정신과 외래·입원환자 심리평가, 인지치료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수련생 교육 및 임상 지도감독 ○ 지역사회 취약계층 대상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 ○ 임상심리실 및 의학도서실 운영
-------------	---

필요역량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	---

필요지식	○ 심리평가를 통한 정신건강의학과 병리적 진단 보조 전문지식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수련과정 운영 및 지도감독 전문지식 ○ 지역사회 정신건강프로그램 지원 및 대외협력 등 통합지원 전문지식
-------------	---

응시 자 격 요 건	자격증	1.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증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자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자격증 취득 후 병원, 치료기관 및 교육기관 등에서 정신질환자 대상 심리치료 및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수련 관련 업무 경력 ※ 민간자격증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에서 확인 가능한 자격증에 한하며, 국제자격증은 증빙 가능하여야 함
우대요건		○ 임상심리전문가((사)한국임상심리학회 발급) 자격증 소지자